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87

발의연월일: 2025. 2. 19.

발 의 자:신정훈·김문수·김재원

차지호 • 강득구 • 모경종

이상식 • 박용갑 • 천준호

이해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는 현형법상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는 대상 선거인 반면,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는 해당 기관이 그 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위탁 대상선거임.

그런데 신용협동조합 역시 농협·수협 및 산림조합과 같이 조합원 간의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금융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88 3개의 조합을 두고 1,676만명의 이용자(2019년 기준)를 대상으로 금융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미 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고 볼 수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과 중앙회장의 선출 역시 다른 조합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 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에도, 신용협동조 합의 선거는 현행법에 따른 의무위탁 대상 선거에서 제외되어 있어 선거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를 의무위탁 대상 선거로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아가 신용협동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가목 등).

법률 제 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및 중앙회"를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24조제3항제2호 중 "선출하는 이사장선거:"를 "선출하는 이사장선거와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사장선거:"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산림조합법」 및 「새마을금고법」"을 "「산림조합법」,「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35조제5항 중 "「새마을금고법」"을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36조 중 "「산림조합법」"을 "「산림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단체등"이란 다음 각 목	1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	
체를 말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	가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	
합 및 중앙회와 「새마을	
금고법」에 따른 금고 <u>및</u>	및 <u>첫</u>
중앙회	중앙회, 「신용협동조합
	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
방법) ①・② (생 략)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선거별 선거운동방법은 다음	③
각 호와 같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2
제5항제1호, 「수산업협동조	
합법」 제46조제3항제1호 및	
「사립조합법」 제35조제4항	

제1호에 따른 선출방법 중 총 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와 「새마을금고법」 제18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 제25조 부터 제3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3. 「농업협동조합법」, 「수산 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 법」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 「농업협 동조합법 제45조제5항제2 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 46조제3항제2호 및 「산림조 합법 . 제35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및 「새마을금고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 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이 사장선거: 제25조 ·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및 제30조의2 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른 방법(제30조에 따른 방법은 중앙회장선거에 한정한다) 제35조(기부행위제한) ① ~ ④ 제

_		_
-		_
-		_
	선출하는 이사장선거와 「4	
-	용협동조합법」 제27조제2학	<u></u> 하
-	및 제3항에 따른 이사장선거	<u>]:</u>
-		
3.		_
-	<u></u> 「산림조학	<u>하</u>
1	법」,「새마을금고법」 및	깆
_	「신용협동조합법」	
-		_
-		_
-		_
-		_
-		-
-		-
-		-
-		_
-		_
-		_
_		_
_		
35	조(기부행위제한) ① ~ ④	1

(생 략)

⑤ 「농업협동조합법」,「수산 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 법」에 따른 조합장·중앙회장 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이 사장·중앙회장은 재임 중에 기 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 · 부의금 품 제공제한) 「농업협동조합 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또는 「새마을금고법」 에 따른 금고 · 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 의 경조사에 축의 · 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 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 합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 당 조합등의 대표자의 직명 또 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 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 다.

(현행과 같음)
⑤
「새마을금고법」, 「신용협
<u>동조합법</u>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 • 부의금
품 제공제한)
「산림조합법」, 「신용협동조
합법
.